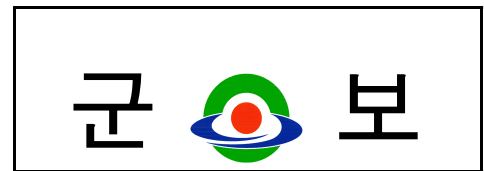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72호 2019. 6 13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입법예고

○ 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장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19-736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6월 13일

예 천 군



1. 제정 이유

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「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, 대규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공급 및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를 대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설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기금의 조성 및 용도(안 제2조 ~ 제3조)
- 다. 기금의 관리 및 운용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- 마. 회계공무원 지정(안 제6조)
- 바. 기금의 존속기한 및 관계 규정의 준용(안 7조 ~ 제8조)

3. 개정조례안

○ 붙임과 같음.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 제14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.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.

라. 입법예고 결과 : 6월 중 입법예고 추진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.

바.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.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서면이나 이메일(junior1233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항목별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: 예천군청 기획감사실(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111)

- 전화 054-650-6817, 팩스 054-650-6059

○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cg.kr/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의 출연금

2.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② 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성된 기금총액이 당해연도 일반회계 규모의 20%를 초과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군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3. 총 사업비 중 예천군 자체재원을 100억원 이상 부담하는 사업
 4. 채무부담 사업비,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 5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
 6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- ②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5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예천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

례」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기획감사실장
2. 기금출납원: 예산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8조(관계 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「예천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참고자료>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재정법】

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재정안정화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재정안정과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듣고자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1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2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즉시 파기함.
3.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음.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☐동의함. ☐동의하지 않음.

2019년 월 일 제공자 성명 (인)

